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8] <신설 2024. 3. 29.>

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805		감귤류의 과실(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805	2	만다린(mandarins)[탄제린(tangerines)·세트수머(satsumas)를 포함한다], 클레멘타인(clementines), 윌킹(wilking)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			
0805	21	만다린(mandarins)[탄제린(tangerines)·세트수머(satsumas)를 포함한다]	감귤은 제외하고,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	10	수입전량
0810		그 밖의 과실(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810	60	두리안(durian)		5	수입전량
2009		과실·견과류 주스(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)·채소 주스[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)]			
2009	4	파인애플주스			
2009	41	브릭스(Brix) 값이 20 이하인 것		10	수입전량

2009	49	기타		10	□
------	----	----	--	----	---